

2026년 제4회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
직원(계약3급 부서장) 공개채용 공고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은 시민 모두가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지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 전문기관으로, 부서 운영을 총괄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 10. 22.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 이사장

I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총2명)

직급	직위	임용기간
임기제 계약직 (3급)	경영전략실장 (1명-행정)	임용일로부터 2년 *1년 단위 연장가능
	도시교육사업본부장 (1명-평생교육)	

□ 근무조건

고용형태	기간제근로자 (계약3급, 부서장)
근로시간	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주 5일(월~금)
보수	공무원 5급 20호봉 상당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혜택은 내부 지침을 따름

II 지원자격

□ 공통요건

연령	성별	지역
만18세이상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제한없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행정 (3급)	1. 공무원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재단 4급 관리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상법상 법인사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의 관리자(위 1호 내지 2호 직급 상당)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학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자
평생 교육 (3급)	1. 평생교육사 1급 소지자 2. 평생교육사 2급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4.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5. 제4호외의 공무원 중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채용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 재단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3. 채용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및 전형방법

전형단계	구분	전 형 방 법
1차	서류심사	○ 심사기준: 제출서류 중심 정성평가(지원서, 직무수행 계획서) ○ 평정요소: ① 전문성(20) ② 리더십(20) ③ 경영혁신(20) (100점 만점) ④ 조직관리능력(20) ⑤ 윤리관(20) ○ 합격기준: 서류평가 점수 고득점순 (채용인원의 5배수이내 선발)
2차	면접	○ 시험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질의응답(대면면접) ○ 평정요소: ① 전문성(20) ② 리더십(20) ③ 경영혁신(20) (100점 만점) ④ 조직관리능력(20) ⑤ 윤리관(20) ○ 합격기준: 위원별 평가점수 100점 만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합산(평균)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채용일정

구분	일정(안)	비고
공고 및 원서 접수기간	10.22.(목)~11. 3.(화)	온라인공고, 이메일 · 방문접수
서류심사	11. 9.(월)	11. 13.(금) 발표, 재단 홈페이지
면접심사	11. 18.(수)	11. 23.(월) 발표, 재단 홈페이지
임용서류제출 및 결격사유조회	11.23.(월)~11.30.(월)	방문제출
최종임용	12. 1.(화)	재단

* 상기 일정은 재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공지)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0. 22.(목) 9:00~ 11. 3.(화) 18:00까지/ 11일간

※ 마감이후 접수자 탈락처리, 접수확인 통보는 이메일 회신

☐ 응시원서: 홈페이지(www.uuli.or.kr) 채용공고 게시판 내 소정양식 사용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recruit@uuli.or.kr), 방문제출(9시~18시)

▶ 제출처: 의정부시 의정로 27, 청소년수련관 3층 경영전략실 채용담당자

☐ 서류제출: 관련 서류를 날인하여, [PDF 파일](#) 형태로 첨부

※ 첨부 파일명: 제4회 공개채용(3급부서장-행정(평생교육)-홍길동) /메일제목도 동일하게 기재

※ 방문 제출시는 출력하여 날인후 제출

○ 제출 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기준 본인확인서 1부
	입사지원서(소정양식) 1부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직무수행 계획서(소정양식)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 응시자격 자격증, 증명서 등에 대한 취득일자, 발행처, 등록번호(자격번호) 기재 ※ 증빙이 없는 사항을 기재할시 허위기재로 간주
면접당일	신분증(본인확인용)
	교육사항 및 자격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자격증 등)
	경력(재직)증명서 및 증빙서류(1종)*
	*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첨부

※ 본 채용은 정부의 출자·출연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연령, 신체적 조건)의 작성을 제한함

7. 기타사항

-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되며, 블라인드 사항 기재로 인한 불이익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 응시자는 자격요건,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여 직무에 본인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입사지원서 접수, 입사지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 최종합격자의 건강검진결과 제출 사항에 따라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을 경우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으며, 학력·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및 임용무효 처리
-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미증빙시 지원서 접수 내용(허위사실 기재, 자격기준 미달)과 다를 경우 및 채용 비리·채용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부정 합격이 확인 될 경우 임용 무효
-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 채용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모든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는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후 절차에 따라 반환
 - 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후부터 180일까지
 - 청구양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청구방법: 팩스(031-828-9504), 이메일(jhk5668@uuli.or.kr)
 - 반환방법: 직접 방문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등기우편 발송
- ☐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단 제규정을 준용
- ☐ 문의사항
 - 담당부서: (재)의정부도시교육재단 경영전략실 경영지원팀
 - 연 락 처: 031-828-9521 (정현경 대리)

■ 재단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이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